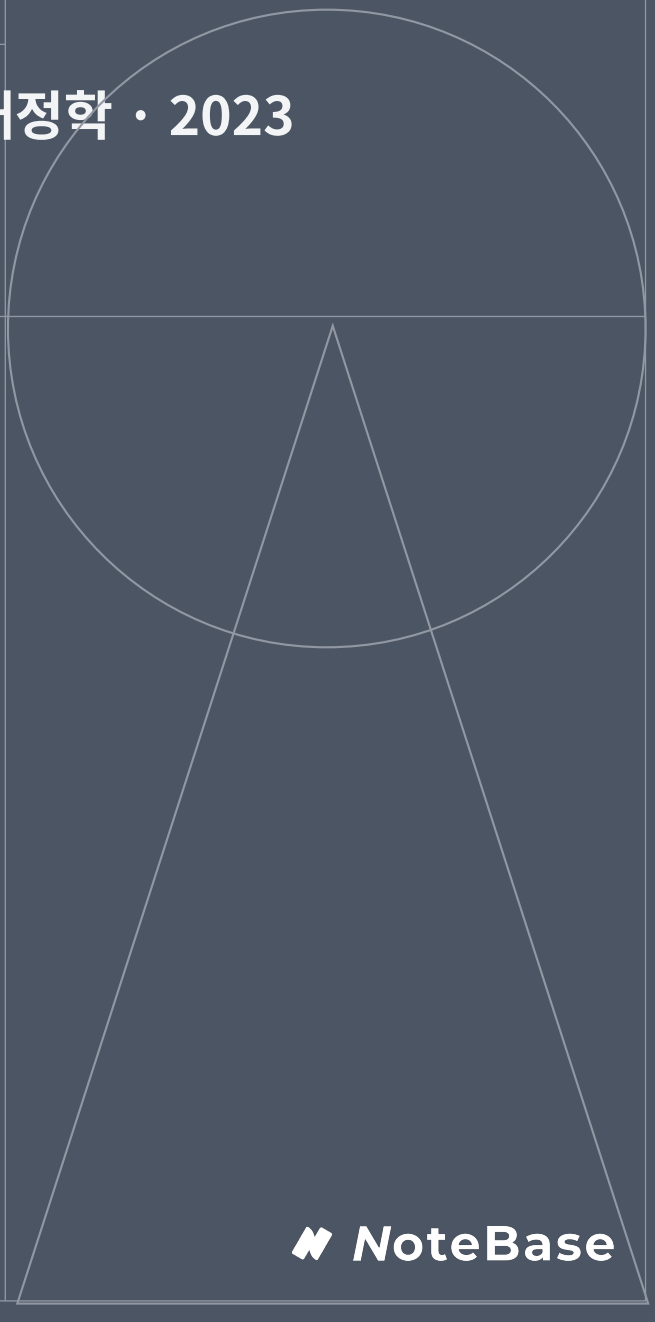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3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3

문 1. 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성이란 조세부과가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 조세부과의 결과로 초과부담이 발생하면 중립적이지 않은 조세로 간주한다.

③ 모든 조세가 반드시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구세(Pigouvian Tax)와 같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조세의 중립성은 **자원배분의 교란과 초과부담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는 조건은 중립성의 정의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조세의 중립성은 세금이 민간의 선택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교란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세금을 내어 구매력이 줄어드는 효과와, 상대가격이 달라져 선택이 왜곡되는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① O: 엄격한 의미의 중립성은 조세가 민간 경제주체의 선택에 **자원배분상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교란이 없다는 것은 세금 납부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초과부담은 조세 수입으로 이전되는 부담을 넘어, 선택의 왜곡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다. 이러한 초과부담이 발생했다면 자원배분이 교란된 것이므로 중립적인 조세로 보지 않는다.

③ O: 조세가 언제나 비효율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피구세는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미 존재하는 자원배분 왜곡을 교정**할 수 있다. 경제행동을 바꾸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피구세가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중립성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정의되지 않는다**. 소득효과는 구매력 변화에 따른 선택의 변화이고,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의 변화이다. 선택과 무관하게 세액이 정해지는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분석에서 초과부담이 없는 중립세의 예가 된다.

따라서 중립성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로 설명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 소득세수입함수가 $T = -400 + 0.4Y$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단, T는 조세수입, Y는 소득, $Y > 1000$이다.)

① 소득세 한계세율은 40%로 일정하다.

② 조세수입은 누진적인 구조를 갖는다.

③ 소득이 1% 증가하면, 세수입은 1%보다 작게 증가한다.

④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득이 1% 늘면 세수입의 증가율은 $\frac{0.4Y}{0.4Y-400} \times 1\%$이다. Y > 1000에서 이 비율의 배수가 1보다 크므로 세수입은 **1%보다 크게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세액이고, 평균세율은 전체 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어진 조건 Y > 1000에서는 조세수입이 양수이므로 세수입 증가율도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① O: 조세수입함수를 소득에 대해 미분하면 $\frac{dT}{dY} = 0.4$이다. 따라서 **한계세율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40%**로 일정하다.

② O: 평균세율은 $\frac{T}{Y} = 0.4 - \frac{400}{Y}$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 효과에 해당하는 $\frac{400}{Y}$가 작아져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평균세율은 증가**하므로 누진적인 조세구조이다. 누진세를 판단할 때 한계세율이 반드시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소득이 1% 증가하면 소득 증가액은 $0.01Y$, 세수입 증가액은 $\Delta T = 0.4 \times 0.01Y = 0.004Y$이다. 따라서 세수입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frac{\Delta T}{T} = \frac{0.004Y}{0.4Y-400} = \frac{0.4Y}{0.4Y-400} \times 0.01$

Y > 1000이므로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분모보다 400만큼 크다. 따라서 세수입은 **1%보다 크게 증가**한다. 한계세율이 40%라는 사실을 세수입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40%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④ O: 한계세율은 0.4이고 평균세율은 $0.4 - \frac{400}{Y}$이다. 둘의 차이는 $\frac{400}{Y} > 0$이므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 이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세수입이 1%보다 작게 증가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3. 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애 전체로 볼 때, 소비흐름이 소득흐름보다 안정적이다.

②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③ 자본이득을 실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우려되는 동결효과를 피할 수 있다.

④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 있어서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출세도 노동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므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교란할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노동·여가 선택에 중립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지출세는 개인의 소득 중 저축으로 남겨 두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비교할 때 소비 시점과 저축에 대한 취급,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구분한다.

① O: 생애주기 관점에서 소득은 취업·퇴직 등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소비는 저축과 차입으로 평탄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가 일시적인 소득보다 안정적인 부담능력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출세를 지지하는 근거이다. 모든 개인의 소비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소득세에서는 물가 상승만으로 생긴 명목 자본이득이나 명목이자의 과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질소득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지출세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산의 명목·실질 수익을 구분하는 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율 구간 조정이나 신고·관리 비용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O: 실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면 매각을 늦추어 납세를 미루려는 동결효과가 생긴다. 지출세에서는 자산 매각대금을 계속 저축·재투자하는 한 소비지출이 아니므로, **매각 자체의 자본이득 과세를 피하려고 자산을 보유**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

④ X: 지출세도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할 때 세금을 부담하게 하므로 노동의 실질 구매력을 낮춘다. 반면 여가 자체에는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노동·소득과 여가 사이의 상대적 보상이 달라진다**. 저축에 대한 과세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노동·여가 선택의 교란이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NoteBase

문 4.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시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정액세(lump-sum tax)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콜렛(W. Corlett)과 헤이그(D. Hague)에 의하면, 여가의 보완재에 대한 고율 과세는 근로소득과 여가간 선택에서의 왜곡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액세에 초과부담이 없는 이유는 **소득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체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로 구매력은 줄지만 상대가격을 바꾸어 선택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제 수요량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합한 결과이므로, **수요량 불변이 곧 대체효과의 부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열등재에서는 과세로 상대가격이 오를 때 수요를 줄이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를 늘리는 소득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실제 수요량이 같아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의 왜곡이 남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초과부담은 정부에 이전되는 조세수입을 넘어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이다. 이를 측정할 때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 소득효과를 분리하고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파악한다. 소득을 일정하게 두는 일반수요곡선의 수요량 변화와 구별해야 한다.

③ (X) 정액세는 개인의 소비량이나 노동량 등 선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므로, **소득효과는 있지만 대체효과는 없다**. 가처분소득은 줄지만 재화 간 상대가격이나 여가의 기회비용을 바꾸지 않아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과부담이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대체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콜렛·헤이그의 논리는 여가에 직접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가의 보완재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소득 과세는 세후임금을 낮추어 여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지만, 여가와 함께 소비하는 재화에 더 무겁게 과세하면 여가 선택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과 여가 간 선택의 왜곡을 상쇄·완화하는 차선의 대안이 된다.

NoteBase

문 5.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40%이고,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어떤 개인의 소득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변화를 옳게 표현한 것은?

① 30%에서 32%로 변한다.

② 30%에서 40%로 변한다.

③ 40%에서 40%로 유지된다.

④ 40%에서 50%로 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실효세율은 **세액을 소득공제 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5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한 세액은 각각 600만 원과 800만 원이므로, 실효세율은 30%에서 32%로 상승한다.

계산 과정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소득공제 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의 40% 세율은 소득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 구별된다.

소득이 2,000만 원일 때: 과세표준은 2,000 − 500 = 1,500만 원이고, 세액은 1,500 × 0.4 = 600만 원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frac{600}{2{,}000} \times 100 = 30\%$이다.

소득이 2,500만 원일 때: 과세표준은 2,500 − 500 = 2,000만 원이고, 세액은 2,000 × 0.4 = 800만 원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frac{800}{2{,}500} \times 100 = 32\%$이다.

정액 소득공제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실효세율은 30%에서 32%로 상승**한다. 증가한 소득 5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은 200만 원이므로 한계세율은 40%로 유지된다. 이 결과는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입의 변화가 직접세보다 크다.

②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간접세보다 우위에 있다.

③ 여가를 고려하면, 직접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고, 조세행정비용도 크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경기에 민감한 소득·기업 이익에 부과되는 **직접세의 세수 변동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소비가 소득보다 안정적인 경향이 있고 누진과세가 소득 변화에 대한 세수 반응을 높이므로, 간접세가 더 크게 변한다는 비교는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와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한다. 실제 효과는 세목과 세율 구조, 공제·환급, 징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세금을 예외 없이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X: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은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큰 편**이다. 소득과 기업 이익이 경기에 민감하게 변하고, 누진소득세는 소득 변화에 따라 세 부담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는 소득·이익보다 변동이 완만한 경향이 있어 이를 과세 기반으로 하는 간접세의 세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② O: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을 반영하고 누진세율이나 공제를 적용하기 쉬워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같은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을 직접 반영하지 않아, 현재소득 중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③ O: 여가를 선택 가능한 재화로 포함하면 노동소득세도 세후 임금을 낮춰 **소비와 여가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꾼다. 따라서 노동공급에 대체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직접세라는 이유만으로 왜곡이 없거나 간접세보다 항상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직접세와 선택에 무관한 정액세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④ O: 직접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뚜렷하게 인식해 조세저항이 큰 경향이 있다. 개인별 소득·재산, 공제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해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커질 수 있다. 간접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부담이 덜 드러나는 편이라는 전형적인 대비이며, 실제 비용은 제도의 복잡성과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일반적인 세수 민감도를 반대로 설명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7.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의 세율은 국회가 결정하고,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②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이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③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6%와 45%이다.

④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이다.

정답 1번

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종목과 세율을 정한다.**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조례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인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고, **담배소비세·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
9. 자동차세

NoteBase

③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 최저세율 6%, 1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M9nF1yAf_zJ5dqyOCvl5HnO7K7_jpS1.webp

④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0%·20%·22%·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20%·22%·25%의 3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m_Y0gjqf-hgQPrQosP2jk34ghxSQMKn.webp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7hz8ndaoBHfo0AnZMPfHE54dJ5ZNazIx.webp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 ·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문 8. 최적물품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모든 조세수입을 이 재화에서 조달해도 무방하다.

② 필수재에는 높은 세율을, 사치재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을 증대시킨다.

③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동기구, 유원지입장료, 골프장입장료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④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가 개인별로 서로 다르다면, 최적세율 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여가에 직접 과세하기 어려울 때는 여가와 함께 소비하는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운동기구·유원지입장료·골프장입장료의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최적물품세는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조세로 인한 후생손실을 줄이도록 물품별 세율을 정하는 문제이다. 효율성만 고려하는 기본 모형의 결론과 소득분배까지 고려하는 결론은 구별해야 한다.

① O: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해도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의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재화에 대한 과세가 대체효과에 의한 소비 왜곡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효율성만 고려하는 기본 모형에서는 이 재화로 필요한 세수를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분배상 제약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결론이다.

② O: 다른 재화와의 교차효과 등을 단순화한 역탄력성 원칙에 따르면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수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사치재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통상적 전제에서는 선지와 같은 방향이 된다. 다만 **필수재·사치재라는 명칭만으로 세율이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 부담 등 분배 효과를 포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③ X: 여가에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가의 상대적 보완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여가 소비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운동기구, 유원지·골프장 이용이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다는 문맥에서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코렛·헤이그 원칙의 방향이다. 이는 모든 물품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높이라는 뜻은 아니다.

④ O: 최적세율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어떤 소득분배를 바람직하게 보는지도 반영해야 한다. 개인별 분배 선호가 다를 때는 이를 사회적 의사결정이나 사회후생함수의 분배 가중치 등에 반영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평가한다. 단순히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만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세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가 보완재 과세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9.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의 포괄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화폐가치로 산정한 것을 포괄적소득으로 정의한다.

②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미실현자본이득을 제외하고 경상적인 요소소득 및 이전소득, 귀속임대료, 비근로소득 등을 포함한다.

③ 포괄적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평적 공평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세원이 광범위하므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세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포괄적소득은 소비와 순자산 증가분을 합한 개념이므로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산의 가치 상승도 포함**한다. 미실현자본이득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문제와 소득의 개념적 범위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포괄적소득은 일정 기간에 새로 얻은 경제적 능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화폐가치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그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분을 합한 금액**이다. 이미 소비한 부분도 경제적 능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말 순자산이 늘어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② X: 포괄적소득에는 경상적 요소소득과 이전소득뿐 아니라 **미실현자본이득도 포함**된다.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가치가 상승하면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가주택에서 얻는 주거서비스의 가치인 귀속임대료 등도 폭넓게 고려한다. 평가의 어려움과 납세자금 부족은 실제 과세 제도의 문제이지 미실현이득을 개념상 제외하는 이유가 아니다.

③ O: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에 동일한 세 부담**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의 발생 원천을 폭넓게 합산해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같은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면, 근로소득인지 자산소득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소득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론적 취지이다.

④ O: 소득의 일부만 과세할 때보다 과세표준을 넓히면, **같은 세수를 더 낮은 세율로 확보**할 여지가 생긴다. 예외·비과세로 세원이 좁아진 경우와 비교한 장점이며, 어떤 낮은 세율에서도 필요한 세수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소득공제는 소득획득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③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형식의 공제를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부문에서 적용된다.

④ 저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정답 4번

①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다.

②

소득획득에 든 비용을 공제하면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담세능력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세부담을 지우는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NoteBase

③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NoteBase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2025.12.23>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NoteBase

④

소득공제는 같은 공제액이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절세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세금을 직접 줄이므로 **저소득층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oteBase

문 11.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일세율 소득세(flat rate income tax) 하에서는 소득분배의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된다.

②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개인단위로 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세는 결혼에 대해 중립적이다.

③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가족단위로 합산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해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④ 누진세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명목소득의 증가는 명목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키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개인단위 과세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득을 따로 과세**하므로, 소득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결혼 자체가 총세부담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과세중립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단일세율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직적 공평성 개선을 단정할 수는 없다**. 별도 공제 없이 모든 소득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소득세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은 더 크지만,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 세후 소득도 모두 같은 비율로 줄어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그대로 남는다. 기초공제 등을 결합하면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배효과는 공제와 세율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② (O) 개인단위 과세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각자의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과 적용 세율표가 같고 결혼 여부에 따른 별도 공제 변화가 없다면, 결혼 전후 모두 두 사람의 개별 세액을 더한 금액이 총세부담이 된다. 따라서 과세단위의 측면에서 결혼에 대해 중립적이다.

③ (X) 누진세제에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동일한 누진세율표를 한 번 적용**하면, 별도로 과세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결혼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벌의 문제이다. 합산한 소득을 부부 수로 나누어 세액을 구한 뒤 다시 배수하는 소득분할 방식과 단순 합산과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④ (X) 과세구간과 공제액이 물가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는 누진세제에서는,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과 실질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명목세액이 단순히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 증가를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과세구간과 공제액의 물가연동이다.

NoteBase

문 1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에서 시행했던 다단계거래세가 기업간 수직통합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었다.

② 소비형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 구입비용을 뺀 것이다.

③ 순소득형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용을 뺀 것을 과세대상 부가가치로 간주한다.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로서 거래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정답 4번

①

다단계거래세는 거래가 거듭될수록 세부담이 누적되어 **거래단계를 줄이려는 기업의 수직통합**을 유발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여 이러한 누적과세와 수직통합 유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고, **자본재 구입비용 전액도 구입한 기간에 공제**하여 과세대상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③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고, 자본재에 대해서는 **구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만 공제**한다.

④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지만,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계산한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먼저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래액공제방식과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NoteBase

문 13.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를 적용하면 그 직전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된다.

② 면세대상에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도서·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등이 있다.

③ 면세 시행에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1번

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직전 단계까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미가공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 법령이 정한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 · 예방 ·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NoteBase

③

저소득층은 소득 중 소비지출의 비중이 커 부가가치세의 소득 대비 부담이 높아지기 쉽다. 기초생활필수품 등을 면세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④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에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른다. 수출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여 수입국 과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NoteBase

문 1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통합을 통해, 법인이윤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이윤이 배당되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나. 통합을 통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부문과 부과되지 않는 비법인부문간 차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다. 통합방식 중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이윤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은 **법인이윤의 이중과세와 기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별**을 조정한다. 사내유보이윤까지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자본이득방식이 아니라 **조합방식**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법인의 이윤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중복하여 과세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통합의 효과와 구체적인 통합방식의 과세 대상을 구별한다.

가. O: 법인이 벌어들인 이윤에 법인세를 부과한 뒤 그 이윤을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면 **같은 경제적 소득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두 세금을 통합하여 중복 부담을 조정하면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나. O: 법인부문에만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있으면 동일한 투자라도 법인과 비법인의 세후수익률이 달라져 자본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통합은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별**을 없애거나 줄여, 그 차별에서 비롯된 자원배분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모든 종류의 시장 왜곡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 X: 법인세를 폐지하고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윤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조합방식**이다. 사내유보이윤도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배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내유보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보이윤 자체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과 주식가치의 증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와 나이며, 이를 묶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서술 중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인플레이션기에 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의 실질가치가 실제의 감가상각액보다 낮아져서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나. 기업이 투자비용을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실질가치가 낮아진다.
다. 인플레이션기에 기업의 재고에 대해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 물품의 생산단가가 낮게 평가되어 법인세 부담은 커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물가 상승기에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높은 원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하므로, 선입선출법보다 과세이익과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고의 장부가액과 매출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인플레이션의 과세 효과는 명목금액과 실질가치가 달라지는 데서 생긴다. 여기서는 과거 취득원가와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물가 상승에 맞춘 자동 조정이 없는 경우를 살펴본다.

가. O: 과거 취득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 공제액은 물가가 올라 자산의 대체비용이 커져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감가상각 공제의 실질가치가 줄어** 실제 경제적 가치 감소를 충분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과세소득과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나. O: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명목채무로 투자를 조달했다면 물가 상승은 갚아야 할 금액의 실질가치를 낮춘다. 이 의미에서 차입으로 부담한 투자비용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명목금리에 반영된 물가 상승분까지 이자로 공제하는 세제에서는 실질이자보다 큰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후 차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생긴다. 모든 금리 조건과 세제를 통틀어 총투자비용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 X: 물가 상승기에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높은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먼저 인식**한다. 따라서 오래된 낮은 원가를 먼저 반영하는 선입선출법보다 매출원가는 높고 과세이익과 법인세 부담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후입선출법에서 기말재고의 장부가액이 낮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출원가가 낮아진다는 뜻으로 혼동한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비례소득세 부과는 대체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② 비례소득세 부과는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③ 이자소득을 제외한 비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④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세후 순임금률이 낮아지게 되어 대체효과가 커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근로소득에 비례세를 부과하면 세후 임금이 낮아져 여가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여가 한 시간을 더 선택하면 그 시간에 벌 수 있었던 세후 임금을 포기한다. 따라서 세후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다.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 상대가격 변화인 대체효과와 구매력 변화인 소득효과로 나누어야 한다.

① X: 세전 임금을 w, 비례세율을 t라고 하면 세후 임금은 $(1-t)w$이다. 근로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선지는 대체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② O: 세금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면 정상재인 여가의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이므로 비례소득세의 최종 노동공급 효과는 둘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③ O: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주어진 비근로소득에만 과세하는 기본 모형에서는 세후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유지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만 줄어들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이 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다.

④ O: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에서는 추가 근로의 보상인 세후 순임금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추가 근로보다 여가를 선택하려는 대체효과의 유인이 강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며, 실제 노동시간 변화의 크기나 방향은 소득효과와 개인의 선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여가를 감소시킨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7.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서 예산선이 평행이동하고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③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저축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이자수익이 줄어 경제적 여력이 감소한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기본모형에서 이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피셔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선택하고, 저축으로 두 시점의 소비를 연결하는 모형이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이 주어져 있고 두 시점의 소비가 정상재이며, 이자소득을 얻는 저축자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① O: 현재의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저축하면 이자와 함께 미래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조세가 가처분소득이나 세후 이자율을 바꾸면 시점간 예산제약과 소비 선택이 달라지므로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② O: 주어진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두 시점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이자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교환비율인 예산선 기울기는 같고, 예산선은 안쪽으로 평행이동한다. 현재소비가 정상재라는 전제에서 소득 감소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③ O: 이자소득세는 저축의 세후수익률을 낮춘다. 현재소비를 한 단위 줄여 얻을 수 있는 미래소비가 감소하므로 현재소비가 미래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X: 저축자의 이자수익이 줄면 경제적 여력이 감소하므로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현재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근로소득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소비 감소는 저축 증가로 이어진다. 이 소득효과는 ③의 대체효과와 반대이므로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차입자의 이자비용 변화까지 같은 소득효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8. 물품세의 귀착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량세로 부과되는 물품세의 귀착은 조세납부의 의무가 생산자와 소비자 중 어느 쪽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②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동시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조세부담 몫이 커진다.

④ 공급곡선이 가팔라질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 몫이 작아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의 통상적인 균형에서는 과세 후 **소비자가격은 오르고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내려간다**. 이 두 가격 변화가 각각의 세 부담이므로 양쪽이 부담을 나누어 가진다.

선지별 해설

경쟁시장의 통상적인 부분균형 분석에서 종량세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 사이에 단위당 세액만큼 차이를 만든다. 과세 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균형에서, 과세 전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오른 부분은 소비자 부담이고 생산자 순가격이 내린 부분은 생산자 부담이다.

① X: 조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법적 의무와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은 다르다. 같은 종량세라면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납부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동일한 가격 차이가 생긴다. **실제 귀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공급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② O: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통상적인 경우, 과세로 거래량이 줄면서 소비자가격은 오르고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내려간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 부담을 나누어 가진다**.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 극단적 경우는 수요나 공급이 완전탄력적 또는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와 관련된다.

③ X: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구매량을 더 쉽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 몫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부담 몫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덜 줄일 수 있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④ X: 같은 가격·수량 기준에서 다른 조건을 고정해 공급곡선이 더 가팔라지는 경우를 비교하면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 생산자가 가격 하락에 대응해 공급량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생산자의 부담 몫은 커진다**. 서로 다른 가격·수량 지점에서 기울기만 보고 탄력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구별한다.

NoteBase

문 19. 지방세로서 적절한 세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에 상응하게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원의 지역간 이동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방세의 적합성 기준은 편익과 부담의 연계, 낮은 이동성, 세수 안정성 등이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고유 세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지역 간에 널리 분포하는 세원이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연결**하는 응익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익을 얻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면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책임성도 높아질 수 있다. 개별 편익을 항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세목 배분의 기본 방향을 말한다.

② (O) 지방세원은 **지역 간 이동성이 낮을수록** 적합하다. 세금 차이 때문에 세원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면 지방정부의 재원이 줄고, 세원을 유치하려는 과도한 조세경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처럼 위치를 옮기기 어려운 과세대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③ (O)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가 필요하다. 경기나 특정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면 지출계획과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수의 안정성은 지방세에 적합한 조건이다.

④ (X) 지방세원이 반드시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세원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보편적인 세원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각 지방정부가 기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고유 자원에 과세하는 세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지역적 독점성이 지방세 일반의 적합성 요건은 아니다.

NoteBase

문 20.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외부성의 비존재 등을 가정한다.

② 일정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징수 및 지방공공재 공급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③ 각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비슷한 기호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

④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타적 구획규제는 티부가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티부가설의 분권적 효율성을 설명하는 단순화된 모형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전제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상의 이익이 계속 커지는 수익증가를 기본 가정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티부가설은 주민이 자신에게 맞는 조세·지방공공재 묶음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선호를 드러낸다는 '발로 하는 투표'의 논리이다. 충분한 선택 가능성과 자유로운 이동 등 강한 조건 아래에서 지방정부 간 선택이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① X: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의 부재는 티부모형의 핵심 가정이다. 그러나 분권적 효율성을 설명하는 단순화된 기본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전제하며 수익증가를 일반 가정으로 삼지 않는다. 규모 확대의 이익이 계속 커진다면 지역을 합쳐 공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 분권적 공급의 결론이 약해진다. 원래 논의에는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적정 지역 규모도 포함되므로, 모든 형태의 규모 효과를 전혀 다루지 않는 이론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② O: 주민이 각 지역의 조세 부담과 공공서비스를 알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지역 간 외부효과 등이 없다면, 지역 선택과 지방정부의 공급 결정을 통해 주민 선호에 맞는 배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효율성 결론은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현실의 모든 분권체제가 자동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③ O: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조세·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면 주민은 자신의 선호와 지불 능력에 맞는 지역을 선택한다. 이 이동과 선택을 통해 **유사한 선호와 소득을 가진 주민의 지역별 분화**가 나타날 수 있다. 거주지 선택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④ O: 배타적 구획규제는 최소 대지면적 설정이나 공동주택 건설 제한 등으로 특정 주거 형태와 주민 구성을 유지하려는 규제이다. 지역의 조세·공공서비스 묶음과 주민 구성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티부식 지역별 분화를 설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저소득층의 진입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현실 사례라는 사실이 규제의 형평성이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 가정을 수익증가로 설명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21.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국민연금은 조기은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강제저축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국민연금은 한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간에도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 수입은 연금급여를 마련하는 수단이며, 일반 재정수입의 확보 자체가 제도의 목적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공적연금의 경제적 근거에는 민간보험의 한계 보완, 노후 준비 부족에 대한 개입, 소득재분배가 있다.

① X: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다. 보험료를 걷고 기금을 운용하지만, 이는 연금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입 확보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② O: 예기치 않은 조기은퇴와 소득 단절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제한적이면 개인의 자발적 선택만으로 필요한 보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적연금은 넓은 가입자 집단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보험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조기에 은퇴한 누구에게나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급여에는 가입기간·연령 등 요건이 적용된다.

③ O: 온정주의적 근거는 개인이 현재 소비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의무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이런 의미에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가진다. '모든 가계'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노후 대비를 지향하는 제도 성격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가입은 법정 대상과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민연금 자체가 개인별 적립액만 돌려주는 단순 저축상품이라는 뜻도 아니다.

④ O: 급여 산정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구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여 **세대 내 재분배**를 일으킨다. 제도 도입 시기와 세대별 보험료·급여 조건의 차이 등은 각 세대의 순부담을 달리하여 세대 간 재분배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목적을 정부 재정수입 조달로 설명한 ①이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22.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교부금이다.

② 비대응보조금은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대응보조금은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대응교부금 지급의 경우보다 공공재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다.

④ 한 지역의 공공사업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 줄 때, 피구적보조금을 통해 이로운 외부효과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

정답 3번

①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이므로 무조건부교부금에 해당한다.

②

비대응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리면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지방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되면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사용재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③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공공재 소비를 늘린다. 이때 상대가격 변화로 소비선택이 왜곡되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피구적 보조금은 **다른 지역에 주는 한계외부편익에 상응하는 보조금**으로 사업 시행 지역에 보상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공공사업의 과소공급을 완화한다.

NoteBase

문 23. 후생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균형은 시장실패 요인 없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얻어진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련의 가정 하에서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여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③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소비자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질 때, 초기부존을 재배분하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도 분권화된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④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파레토 효율성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는 **모든 개인의 효용 합이 최대라는 조건과 다르므로**, 모든 효율적 배분이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후생경제학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가 선호하는 분배 상태를 구별한다. 파레토 기준은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는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지만, 사회후생함수는 서로 다른 배분을 추가적인 가치 기준으로 비교한다.

① O: 일반경쟁균형은 소비자와 기업이 주어진 가격에 따라 최적 선택을 하고, 재화·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치하는 상태이다. 선지는 시장실패 요인이 없고 각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는 **표준적인 완전경쟁 시장경제**의 균형을 설명한다. 이는 모든 현실의 시장이 자동으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② O: 제1정리는 외부효과나 시장 누락 등의 문제가 없고 선호의 국소적 비포화성 등 필요한 가정이 충족될 때 **경쟁균형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인다. 개별 주체의 분권적 최적 선택이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소득분배의 공평함까지 보장하는 정리는 아니다.

③ O: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 등 필요한 조건 아래에서 **초기부존을 적절히 재배분한 뒤 시장을 이용**하면 원하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생산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생산가능집합의 볼록성 등도 전제되므로 선호의 볼록성 하나만으로 언제나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배분은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는 일괄 이전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 경우이다.

④ X: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은 비교 가능한 개인 효용의 합으로 평가한다.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라도 한 사람의 효용을 조금 줄이는 대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더 크게 늘려 효용 합을 높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만으로 효용 합의 극대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효용 합을 전역적으로 극대화한 배분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면 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기므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NoteBase

문 24.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거래가 위축되기도 한다.

②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높은 생산량을 선택한다.

③ 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④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개살구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임승차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비배제성** 때문에 생긴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시장보다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 통상적인 단일가격 독점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택하며, 그때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이 생산비용보다 큰 일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② (O) 기업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적 한계비용에 오염의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높다**. 기업은 자신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생산을 결정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쟁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이 생산한다.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③ (X) 무임승차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다릴 유인이 생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므로, 무임승차의 원인인 비배제성과 구별해야 한다.

④ (O) 개살구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의 품질을 더 잘 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한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해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고품질 상품의 판매자는 그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을 떠날 수 있다. 평균 품질과 지불의사가 함께 낮아져 거래가 위축되며, 심하면 시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NoteBase

문 25. X재의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각각 $Q^D = 100$과 $Q^S = 5P + 20$이다. 여기서 P는 가격이며 단위는 원이다. 정부는 X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1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같다.

②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③ 물품세 부과로 얻게 되는 총 세수는 100원이다.

④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0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요량이 100으로 고정되어 생산자의 순가격은 16원으로 유지되고, **소비자가격은 세액만큼 올라 17원**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과세 전후 같다는 진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수요가 $Q^D = 100$으로 가격과 무관하므로 수요곡선은 수직이며 완전비탄력적이다. 과세 전 균형은 $100 = 5P + 20$에서 P = 16원, 거래량은 100이다. 과세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 생산자가 세금을 낸 뒤 받는 순가격을 P_s라 하면 $P_c = P_s + 1$이며, 공급량은 생산자의 순가격으로 결정된다.

① X: 과세 후에도 수요량은 100이므로 $100 = 5P_s + 20$에서 생산자 순가격은 16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은 16 + 1 = 17원으로, **과세 전보다 1원 오른다**. 생산자가 납부 의무를 지더라도 소비자가 세 부담 전부를 부담한다.

② O: 수요량은 가격이 16원에서 17원으로 올라도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 전후 균형거래량은 모두 100**이다. 공급자가 받는 순가격도 16원으로 유지되어 같은 수량을 공급한다.

③ O: 총 세수는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금액이다. 단위당 1원을 거래량 100에 부과하므로 총 세수는 $1 \times 100 = 100$원이다.

④ O: 통상적인 부분균형 분석에서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세금 때문에 유익한 거래가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이 문제에서는 **과세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은 0**이다. 소비자의 부담 100원이 정부의 세수로 이전되는 것과 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구별된다.

NoteBase

문 26. 공공재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배제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클럽재라고 한다.

② 그로브즈(T. Groves)와 클라크(E. Clarke)가 제시한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예산의 균형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③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교환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과 비용부담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소비자들이 공공재와 사용재를 함께 소비하는 사무엘슨모형에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은 개인들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는 같은 공급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므로 추가 공급의 편익을 개인별로 더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 공급의 내부해에서는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같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클럽재는 회원 자격이나 요금 등으로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고, 일정 수용 범위 안에서는 공동 이용이 가능한 재화이다. 혼잡은 이용자가 많아져 다른 사람의 이용 편익이 줄어드는 **비경합성의 한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혼잡의 원인을 비배제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X: 그로브즈·클라크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진실하게 보고하도록 유인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 결정을 유도한다. 그러나 개인별 부담액의 합이 공공재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산균형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진실한 보고와 효율성의 달성이 예산균형의 달성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다.

③ X: 린달 모형은 각자가 부담할 개인별 조세가격에서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도록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때 효율적인 공급량을 도출하려면 소비자의 **진정한 선호가 드러나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고 편익을 축소 보고하면 실제 선호에 근거한 최적 생산량과 부담비율을 그대로 구할 수 없다.

④ O: 공공재 G와 사용재 X 사이의 개인 i의 한계대체율을 MRS^i_{GX}, 생산 측 한계변환율을 MRT_{GX}라고 하면 효율적 공급의 내부해 조건은 $\sum_i MRS^i_{GX} = MRT_{GX}$이다. 한계대체율은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각 개인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 사용재의 양이고, 한계변환율은 추가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의 기회비용이다. 같은 공공재 증가의 편익을 모두가 함께 누리므로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한다.

따라서 사무엘슨의 효율적 공공재 공급조건을 설명한 ④가 옳다.

NoteBase

문 27. 다음 중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애로우(K. Arrow)가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안 X를 대안 Y보다 선호하면 사회적으로도 대안 X가 대안 Y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때 바탕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는 단봉선호와 같이 현실적인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③ 대안 X가 대안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대안 Y가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면, 대안 X는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④ 대안 X와 대안 Y에 관한 사회적인 선호는 이 두 대안 외의 다른 대안들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애로우는 개인의 선호를 단봉선호로 제한하지 않고, 일관된 개인 선호 순위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허용하는 **무제한 정의역**을 요구한다. 단봉선호라는 추가 제약은 이 조건과 다르다.

선지별 해설

애로우가 논의한 사회적 선호체계는 개인들의 선호를 모아 사회 전체의 일관된 순위를 정하는 체계이다.

① O: **만장일치 원칙 또는 약한 파레토 원칙**이다. 모든 개인이 X를 Y보다 선호하면 사회적 순위에서도 X가 Y보다 앞서야 한다. 단순히 과반수의 선호를 따른다는 조건보다 전원의 일치에 관한 조건이다.

② X: 애로우의 조건은 개인 선호를 단봉선호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정의역**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호가 완비성·추이성 등 일관된 순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 가능한 조합을 모두 사회적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다. 단봉선호는 하나의 축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선호가 낮아지는 형태로, 이를 요구하면 허용되는 선호의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게 된다.

③ O: **사회적 선호의 추이성**을 설명한다. 사회가 X를 Y보다, Y를 Z보다 선호하면 X도 Z보다 선호해야 한다. 이 조건은 X, Y, Z 사이의 순위가 순환하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요구한다.

④ O: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각 개인의 X와 Y 사이 상대적 선호가 같게 유지된다면, 다른 대안에 대한 평가나 순위만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의 X와 Y 사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애로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NoteBase

문 28. 공공도서관에 배정할 예산수준을 해당 분야 담당자 3인이 결정하려고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0(배정 없음), L(낮은 수준), M(중간 수준), H(높은 수준) 네 가지이며 이에 대한 담당자들의 선호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꽁도세승자(Condorcet winner)를 최종선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담당자	선호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나열)
1	L, 0, M, H
2	M, L, H, 0
3	H, M, L, 0

① 이들의 선호는 0-L-M-H 순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봉선호이다.

② 최종적으로 M이 선택된다.

③ 대안 0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결과가 바뀐다.

④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M은 0·L·H와 각각 비교할 때 모두 2 대 1로 이기는 **꽁도세승자**이다. 0을 제외해도 M과 L·H 사이의 투표 결과는 바뀌지 않으므로 최종 선택은 그대로 M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꽁도세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의 일대일 다수결에서 이기는 대안이다. 표의 선호는 가장 좋아하는 순서로 담당자 1이 L → 0 → M → H, 담당자 2가 M → L → H → 0, 담당자 3이 H → M → L → 0이다.

① O: 예산수준을 0 → L → M → H로 놓으면 각자의 최고 선호는 각각 L, M, H이다. 담당자 1은 L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M, H의 선호가 낮아지고, 담당자 2는 M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L, 0의 선호가 낮아진다. 담당자 3도 H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M, L, 0의 선호가 낮아진다. 따라서 모두 **최고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선호가 낮아지는 단봉선호**이다. 최고점 양쪽의 대안들을 서로 비교한 순위가 거리만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M과 0을 비교하면 담당자 2·3이 M을, 담당자 1이 0을 선택한다. M과 L도 담당자 2·3이 M을 선택하고, M과 H는 담당자 1·2가 M을 선택한다. 따라서 M은 **다른 모든 대안에 2 대 1로 승리**하여 최종 선택된다.

③ X: 0을 제외해도 각 담당자의 M·L·H에 대한 상대적 선호는 그대로이다. M은 L에 대해 담당자 2·3의 지지를 받고, H에 대해 담당자 1·2의 지지를 받아 계속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최종 선택은 바뀌지 않고 M으로 유지**된다.

④ O: 투표의 역설은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다수결의 집단 선호가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M이 L·H·0에 이기고, L이 H에 2 대 1, 0에 3 대 0으로 이기며, H도 0에 2 대 1로 이긴다. 집단 선호가 M → L → H → 0의 일관된 순서를 이루므로 다수결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9. 관료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니스카넨 모형(Niskane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관료들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③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인 공급량에서는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교차한다.

④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초과공급하게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사회적 순편익보다 **기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때문에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점에서도 공급 확대를 멈출 유인이 부족하여 과잉공급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니스카넨의 기본 모형은 관료가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예산 확대가 조직의 권한·위신·승진 기회 등 관료의 효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순편익 극대화가 관료의 직접적인 목표라는 가정은 아니다.

② X: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사회적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내부해의 조건이다. 관료는 예산이 비용을 충당하고 예산 지원자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범위에서 예산·공급량을 확대하려 한다. 총편익이 허용하는 예산과 총비용의 제약이 등식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공급량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③ X: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두 곡선의 교점은 총순편익이 0인 지점이므로 사회적 최적 조건과 다르다. 통상적인 내부 최적점에서는 두 총량곡선의 높이가 아니라 기울기, 즉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④ O: 관료는 사회적 최적점에 도달한 뒤에도 예산 확대가 가능하면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다. 기본 모형에서 그 결과 **사회적 최적 수준을 넘는 과잉공급**이 나타난다. 추가 공급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커지는 구간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순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

NoteBase

문 30.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A의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내년의 비용과 편익만을 할인하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1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억 원)		올해	내년
사업 A	비용	11	33
	편익	44	0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3억 원이다.

② 비용의 현재가치는 41억 원이다.

③ 내부수익률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④ 편익-비용비율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은 **0%**이다. 이 문항의 통상적 내부수익률 비교 기준에서는 **할인율 10%보다 낮으므로**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출제 포인트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의 판정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금액의 단위는 억 원이다. 올해 비용은 11, 편익은 44이고 내년 비용은 33, 편익은 0이다. 올해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내년 금액만 할인율 10%로 할인한다.

사용할 공식

내년 금액의 현재가치 = 내년 금액1 + 할인율이다. 미래 금액을 올해 가치로 환산해야 서로 다른 시점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이다.
편익-비용비율 = 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이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내년 비용의 현재가치는 $\frac{33}{1.1} = 30$억 원이다. 올해 비용 11억 원을 더하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41억 원이다.
2. 내년 편익은 0이므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올해 편익인 44억 원이다. 순현재가치는 $44 - 41 = 3$억 원이다.
3. 편익-비용비율은 $\frac{44}{41} \approx 1.073$으로 1보다 크다.
4. 올해 순편익은 $44 - 11 = 33$억 원이고 내년 순편익은 $0 - 33 = -33$억 원이다. 내부수익률을 r이라 하면 $33 - \frac{33}{1+r} = 0$이다. 따라서 $1 + r = 1$이고 $r =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편익의 현재가치 44억 원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41억 원을 빼면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3억 원이다.
② O: 올해 비용 11억 원과 내년 비용의 현재가치 30억 원을 더하면 41억 원이다.
③ X: 내부수익률은 0%로 할인율 10%보다 낮다. 이 문항에서 적용하는 통상적 내부수익률 비교 기준에 따르면 '타당하다'는 '타당하지 않다'로 고친다.
④ O: 편익-비용비율이 $\frac{44}{41}$로 1보다 크므로 편익-비용비율법의 타당성 요건을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타당하다'를 순현재가치가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의 내부수익률 비교에서는 순현재가치 3억 원이 아니라 내부수익률 0%와 할인율 10%를 비교한다.
다만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으면 채택한다'는 통상적 기준은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투자형 사업을 전제한다. 이 사례는 올해 순편익이 양수이고 내년 순편익이 음수인 반대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미래 비용의 현재가치가 줄어 순현재가치가 커진다. 따라서 이 문항의 판정 기준을 모든 사업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별 편익에서 비용을 빼 순편익의 부호를 확인한 뒤, 미래 금액을 할인한다. 순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와 0, 편익-비용비율법은 비율과 1을 비교한다. 내부수익률법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고 현금흐름의 방향에 맞는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순현재가치: 금액과 0을 비교한다. 편익-비용비율: 비율과 1을 비교한다.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채택 기준은 현금흐름의 방향을 확인한다.

NoteBase

문 31.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이고 소득은 50원으로 주어진다. 현재 두 재화의 시장가격은 모두 1원인데, 정부는 x재에 대해 50%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물품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x재의 소비를 5만큼 감소시킨다.

② 물품세로 인한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 감소시킨다.

③ 물품세 도입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④ 정부는 총 12.5원의 조세수입을 얻게 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재화는 1:1로 함께 소비해야 효용이 증가하는 **완전보완재**이므로 대체효과는 없다. 물품세로 실질 구매력이 줄어 최적 소비량은 각각 25에서 20으로 감소하며, 이 감소는 **소득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효용이 두 소비량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되므로 최적점에서는 X = Y이다. 과세 전 예산식은 $X + Y = 50$이므로 두 재화를 각각 25단위 소비한다. x재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붙이면 단위당 세금은 0.5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5원이다. 과세 후에는 $1.5X + Y = 50$과 X = Y에서 두 재화를 각각 20단위 소비한다.

① X: 완전보완재는 상대가격이 달라져도 **효용을 유지하는 최소비용 소비비율이 1:1**이다. 원래 효용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상하면 여전히 X = Y = 25를 선택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한 x재 소비 감소는 0이다. 실제 감소량 5를 대체효과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O: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두 재화의 소비가 각각 25에서 20으로 줄어든 것은 모두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이다. 한 재화에 세금이 붙어도 1:1 묶음의 비용이 올라 두 재화의 소비가 함께 감소한다.

③ X: 이 소비자와 주어진 모형에서는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후 세수는 10원인데, 물품세 대신 소득에서 10원을 정액으로 거두어도 원래 가격에서 $X + Y = 40$이 되어 X = Y = 20을 선택한다. 같은 세수를 거두는 정액세와 효용이 같으므로 추가적인 효율성 손실은 없다. 세금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는 것 자체와 초과부담은 구별된다.

④ X: 단위당 세금은 0.5원이고 **과세 후 x재 소비량은 20**이므로 조세수입은 $0.5 \times 20 = 10$원이다. 12.5원은 과세 전 소비량 25를 그대로 곱한 값으로, 세금 부과 후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재화의 소비가 소득효과로 감소한다고 한 ②가 옳다.

NoteBase

문 32. 수도사업과 같이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가정한다.)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며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②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을 이용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생산량이 적어진다.

③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④ 이부가격을 이용하면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평균비용을 요금으로 보전해 주면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인 이익도 요금 인하로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비용절감 유인이 약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규모 고정설비를 갖추고 생산량이 늘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자연독점의 비용구조를 전제한다. 이 범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추가 생산이 평균비용을 끌어내린다. 따라서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② O: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추어 총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고, 한계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는 방식이다.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통상적인 자연독점 균형에서는 **평균비용가격이 더 높고 생산량은 더 적다**. 우하향 수요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이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③ X: 발생한 비용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는 평균비용가격설정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도 요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반대로 비용을 줄여도 요금 인하로 이어지면 절감 이익을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 방식은 **비용절감 유인이 약하다는 문제**를 가지며, 비용절감 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④ O: 이부가격은 사용량과 무관한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한 이용요금을 결합한다. **한 단위 추가 이용요금을 한계비용에 맞추고** 부족한 비용을 기본요금으로 회수하면 효율적인 이용량과 비용 회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등 적절한 설계 조건이 필요하며, 모든 이부가격이 자동으로 자중손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3. 공공서비스 X재와 Y재의 가격을 램지가격설정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두 재화간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이고 두 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항상 C로 동일하게 주어질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가격설정 방식은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② X재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X재의 가격은 한계비용에 가까워진다.

③ 각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항상 단위탄력적이라면 X재의 가격과 Y재의 가격은 동일하게 결정된다.

④ 고소득자에게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분배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램지가격은 소득수준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더 큰 가격 가산율**을 적용한다.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필수재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으므로, 이 방식이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 램지가격의 역탄력성 원칙은 $\frac{P_i - C}{P_i} = \frac{k}{\varepsilon_i}$로 나타난다. 여기서 i는 X 또는 Y, P는 가격, C는 공통 한계비용, ε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며, k는 비용 충당 제약에 따라 두 재화에 공통으로 정해지는 값이다. 가격 대비 한계비용 초과분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커진다.

① O: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을 받는 것만으로 고정비용 등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램지가격은 이때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충당한다는 제약** 아래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선의 가격설정 방식이다. 제약 없이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② O: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면 가격 인상으로 소비량이 크게 줄어 후생손실이 커진다. 역탄력성 원칙에 따라 탄력성이 큰 재화에는 작은 가격 가산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X재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한계비용 C에 가까워진다.

③ O: 두 재화 모두 단위탄력적이면 $\varepsilon_X = \varepsilon_Y = 1$이므로 가격 가산율이 같은 k가 된다. 한계비용도 C로 같으므로 $P_X = P_Y = \frac{C}{1-k}$로 동일하게 결정된다. 이는 비용 충당이 가능한 램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의 가격 비교이다.

④ X: 기본적인 램지가격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이 아니다**. 가격에 둔감한 수요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므로, 대체재가 적은 필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려면 소득별 부담이나 별도의 재분배 수단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문 34. A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여 각 사회 구성원에게 $\max\{m - tY, 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여기서 m은 기초수당, t는 한계세율, Y는 개인이 스스로 번 소득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m이 50만 원이고 t가 0.5일 때, 스스로 번 소득이 80만 원인 개인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스스로 번 소득보다 크다.

② 보조금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소득수준은 $\frac{m}{t}$ 원이다.

③ 부의 소득세제 운영에 주어진 예산이 일정한 경우, 기초수당을 높이려면 한계세율을 낮춰야 한다.

④ 한계세율이 1인 경우, 스스로 번 소득이 기초수당액보다 적은 사람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초수당을 올리면서 한계세율까지 낮추면 **보조금 지출을 두 방향에서 모두 늘리게 된다**. 예산이 일정하다면 한계세율을 높여 보조금 삭감 폭을 키우는 방향의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계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금액을 만 원 단위로 계산하면 보조금은 $\max\{50 - 0.5 \times 80, 0\} = 10$만 원이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에 보조금을 더한 $80 + 10 = 90$만 원으로, 스스로 번 소득 80만 원보다 10만 원 크다. 이 구간에서는 **양의 보조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② (O) 한계세율이 양수인 경우, 보조금이 0이 되는 경계는 $m - tY = 0$을 풀어 구한다. 따라서 **수급이 끝나는 소득수준**은 $Y = m/t$원이다. 그보다 소득이 높아지면 괄호 안의 값은 음수가 되지만, 주어진 최댓값 함수에 따라 보조금은 0원으로 유지된다.

③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초수당 m을 올리면 개인별 보조금이 커지고 수급 범위도 넓어진다. 여기에 한계세율 t까지 낮추면 소득 증가에 따른 보조금 삭감이 더 느려져 지출이 추가로 늘어난다. 따라서 예산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초수당 인상을 뒷받침하려면,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서 보조금 삭감 폭을 늘리는 방향**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는 기초보장 수준과 근로유인의 상충을 보여 준다.

④ (O) $t = 1$이고 스스로 번 소득이 기초수당보다 적으면 보조금은 $m - Y$, 가처분소득은 $Y + (m - Y) = m$이다. 이 수급구간에서는 소득을 1원 더 벌어도 보조금이 1원 줄어 **추가 근로가 가처분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근로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NoteBase

문 3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② 근로빈곤층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제공을 위해 도입하였다.

③ 가처분소득은 소득수준이 0으로부터 증가할 때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소득이 상당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④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정답 3번

①

단독·홑벌이·맞벌이의 **가구 유형별 산정기준에 총급여액 등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VODlljPp0HPwaXZSL7FdHcOuDK1M2DvF.webp

②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 환급한다.

③

점감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다. 장려금 감소액이 추가 근로소득보다 작으므로 **가처분소득은 증가 속도가 낮아질 뿐 계속 증가**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이면 평탄구간에서는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 **대체효과도 노동공급 감소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문 36.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예산이 사용될 때 수혜자는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를 선호한다.

② 현금보조시에는 개인의 선택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③ 현물보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유인을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④ 현물보조는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는 현물보조로 얻을 소비묶음도 살 수 있고 다른 묶음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소비자모형에서 현금보조의 효용은 **현물보조보다 크거나 같다**.

선지별 해설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금전을 지급하고,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용도를 제한한다. 다음 비교는 재화 가격과 전달비용 등의 조건이 같고,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를 선택하는 기본모형에 따른다.

① X: 현금보조를 받으면 현물보조와 같은 재화를 구입하는 선택도 가능하므로, 현금보조의 선택가능집합이 더 넓다. 따라서 수혜자는 **현금보조를 더 선호하거나 두 방식을 무차별하게 평가**한다. 현물보조가 자신이 원하는 소비구성을 제약하면 현금을 더 선호하고, 현물로 받은 양 이상을 원래 소비하려 했다면 두 방식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② O: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정액 현금보조는 재화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구매력을 늘린다. 수혜자가 원하는 소비구성을 선택하므로 특정 재화의 소비를 강제하는 데 따른 왜곡이 없다. 다만 소득 증가로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조사·급여감액 조건이 노동유인에 주는 영향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현물급여가 대상자에게는 유용하지만 비대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유인이 줄어드는 **자기선별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상자가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장점은 급여의 특성과 재판매 제한 등에 달려 있으며,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 신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O: 정부가 특정 재화를 구매해 제공하거나 그 재화에 지출을 유도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수혜자뿐 아니라 **판매 기회를 얻는 생산자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매량·가격·이윤의 변화는 공급조건과 기존 민간구매가 대체되는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생산자의 이윤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7.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캐넌(J. Buchanan)은 조세를 여러 가지로 잘게 쪼개 부과하면, 납세자들이 조세의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다운즈(A. Downs)는 납세자가 정부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재정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③ 오우츠(W. Oates)는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데, 이를 납세자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④ 오우츠(W. Oates)는 납세자들이 국채가 미래의 조세부담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운즈는 정보 수집 비용과 낮은 정치 참여 유인 때문에 **유권자의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 활동의 편익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공공예산을 작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정보가 충분해 재정착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진술과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재정착각은 정부 활동의 편익이나 비용을 체계적으로 잘못 인식하여 재정 선택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방향의 착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목을 과대·과소평가하는지를 구분한다.

① O: 부캐넌은 조세 부담이 여러 작은 세목으로 나뉘면 납세자가 개별 납부액만 인식하고 **전체 조세 부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총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보다 부담이 덜 두드러져 보이는 조세체계 복잡성의 문제이다.

② X: 다운즈는 정치·정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들고, 개인의 한 표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유권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부 활동의 편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우보다 공공예산을 작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보 불완전성이 드물어 재정착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은 반대이다.

③ O: 오우츠가 검토한 세수의 소득탄력성 가설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세원이 늘고, 탄력성이 높으면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세율표를 명시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부담이 커지므로 **새로운 세율 인상보다 부담 증가가 덜 두드러질 수 있다**. 납세자의 저항이 약해져 재정 팽창을 용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 모든 납세자가 언제나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실증 법칙은 아니다.

④ O: 오우츠가 논의한 국채착각은 현재의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충당할 때 납세자가 **그에 대응하는 미래 조세 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현재 증세가 없다는 점만 보아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낮게 인식하면 더 큰 지출을 선택할 수 있다. 국채가 실제로 비용 없는 재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8.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한 견해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학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느리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비용절감이 힘들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 시기에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허용 수준이 높아져 갑작스런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사회적 혼란기를 지난 후에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부캐넌(J. Buchanan)
② 보몰(W. Baumol),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③ 부캐넌(J. Buchanan),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④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보몰(W. Baumol)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비용이 커지는 현상은 보몰의 **비용질병**이다. 위기를 계기로 높아진 조세부담 허용 수준과 정부지출이 이후에도 유지되는 현상은 피콕-와이즈먼의 **전위효과**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보몰: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에 따른 비용질병**을 설명한다. 교육·치안처럼 노동 투입 자체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 활동은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민간부문의 임금이 상승하고 공공부문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함께 올리면, 공공부문은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 상승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해 서비스 한 단위당 비용이 커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려면 지출이 늘어나므로, 가의 생산성 정체와 비용 상승은 보몰의 견해에 대응한다.

나. 피콕-와이즈먼: **사회적 혼란을 계기로 한 전위효과**를 설명한다. 평상시에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조세부담 수준이 정부지출 확대를 제약하지만, 전쟁 등 위기에는 더 높은 세금과 지출을 수용하게 된다. 위기가 끝난 뒤에도 변화한 조세 수용 수준과 확대된 정부활동 때문에 지출이 위기 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간다. 나의 표현은 이러한 계단식 확대와 높은 지출 수준의 지속을 가리키며, 매년 지출 비중이 반드시 계속 상승한다는 법칙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는 보몰, 나는 피콕-와이즈먼에 해당하므로 ②이다.

NoteBase

문 39. 정부는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A기업에게 피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기업이 Q 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적 한계비용은 $80 + Q$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지역사회가 입는 한계피해는 $\frac{1}{2}Q$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이 200일 때,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한 피구세는? (단, A기업은 경쟁시장 내의 기업이다.)

① 10

② 20

③ 40

④ 8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피해를 합한 $80 + \frac{3}{2}Q$이다. 이를 가격 200과 같게 하면 최적생산량은 80이고, 이 생산량에서의 **단위당 한계피해 40**이 피구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경쟁기업은 가격과 자신이 부담하는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오염 피해는 기업 밖의 지역사회가 부담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에는 사적 한계비용뿐 아니라 한계피해도 포함해야 한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다.

aligned&SMC(Q)=PMC(Q)+MD(Q)=80+Q&+(1)/(2)Q=80+(3)/(2)Qaligned

여기서 PMC는 사적 한계비용, MD는 한계피해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상품의 가격 200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다.
$200 = 80 + \frac{3}{2}Q$
$Q^* = \frac{120}{3/2} = 80$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80단위이다.

피구세는 기업이 외부피해를 자신의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단위당 세금이므로, **최적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와 같게 정한다.
$t = MD(Q^*) = \frac{1}{2} \times 80 = 40$
이는 총오염피해나 총세액이 아니라 생산 한 단위당 세액이다.

이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은 $200 = 80 + Q + 40$을 만족하는 $Q = 80$을 선택하여 사회적 최적생산량에 도달한다. 따라서 필요한 피구세는 40이며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0. 불평등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②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③ 5분위배율(quintile share ratio)이 작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④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에 따른 후생손실을 반영하며, **같은 불평등 회피 성향에서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도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큰 방향의 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고 작을수록 평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낸다. 완전평등선인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두 선이 일치하여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얻으면 지니계수는 0이다.

② (X)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누적한 인구비율과 그들이 차지하는 누적 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하며, 대각선에서 아래로 멀어질수록 소득이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것이다. 대각선은 하위 20%가 전체 소득의 20%를 얻는 것처럼 인구비율과 소득비율이 같은 상태이다.

③ (X)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같은 크기의 집단을 비교하므로 집단별 평균소득의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 비율이 클수록 상·하위 집단의 격차가 크고, 작아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 따라서 선지는 지수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④ (O) 앳킨슨지수는 **같은 불평등 회피 성향을 기준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크다**고 평가한다. 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으면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1인당 소득을 균등분배대등소득 Y_e, 실제 평균소득을 $\overline{Y}$라 하면 지수는 $1 - Y_e/\overline{Y}$이다. 불평등에 따른 후생손실이 클수록 Y_e가 평균소득에 비해 낮아져 지수가 커진다.

NoteBase